



## 계균혈청검사 협의모임

- 6월 21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

금년 7월부터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본회가 주관하는 계균혈청검사 사업에 대한 구체 방안을 마련기 위한 모임이 안양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각 농장대표, 가축위생연구소장 및 계역과 담당관, 본회 황인옥전무 등 25명이 참석했는데, 설동섭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각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당국에서도 계균혈청검사 사업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남궁 선 계역과장은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연구소의 최정우 박사는 혈청검사 범위, 실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한 뒤 농장대표들의 궁금한 점을 물었다.

연구소측은 채혈시 1% (1,000수당 10수)의 샘플을 추출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신청수수가 130여만 수에 이르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 13,000 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각 농장에서는 채혈 숙지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축산기술상담소 현판식

- 양축가 대상으로 기술 상담 -



△축산기술상담소 현판식

6월 8일 축산회관 현판에서는 축산기술상담소 현판식이 송찬원 축산국장, 본회를 비롯한 축산생산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그동안 양축가들의 요구 등 상담소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이번 축산회관 단장공사와 함께 상담소가 설치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생산자단체가 생산자를 위한 본격적인 기술상담을 하게 되었는 바 각 단체들은 양축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판식이 끝난 후 동 지하회의실에서 축산문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송찬원 축산국장은 최근의 축산동향에 대해 밝히고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단체들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축산과장, 낙농과장과 관계관이 함께 참석하여 축산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농번기 모내기 봉사

본회, 양돈협회, 낙농비육협회, 종축개량협회, 유가공협회 등 축산단체 직원 40여명은 지난 6월 3일 파주군 금촌리 하지석리(속명 썩은 배미)에서 모내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정부의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책으로 이루어진 이날 봉사활동은 고속버스를 이용, 각기 간편한 옷차림으로 교외로 나가서 봉사대원들은 오랜 만에 시골 정취와 함께 자연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무허가건물양성화 과태료율인하 재건의

### -건설부와 민정당에-

본회는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율이 축사의 경우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관계 요로에 요율인하와 실시시기를 늦춰줄것을 전의한 바 그 시기만 9월 말로 연기한 것에 대해 양축가들의 불만의 소지가 높아 건설부와 민정당 정책위원회에 각각 축사 과태료율 인하를 재건의 했다.

건설부에는 지난 6월 10일 ▲「과거 무허가 양계장건립을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묵인해 주어 국내 대부분의 양계장이 간이 계사식 무허가 건물이고 일부 극소수의 전업 또는 기업양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양계인

들이 그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법은 축사의 과태료율이 너무 높아 무허가 양계장의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대부분의 영세양계인들은 생업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불만의 소지가 높고 축산물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등 민원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전 양계인을 대표하여 과태료율인하를 재건의 하오니 현행요율의 10분 1이하로 인하토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재건의 한바 있다.

또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는 6월 13일 ▲「현행법으로 축사의 과태료율이 평당 2만원 정도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영세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의 양성화혜택을 못받게 되었으며 신고기한인 9월 30일까지 시행을 강행할 경우 대부분의 영세축산인들은 생업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불만의 소지가 높고 축산물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민원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전국 2백만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징수율 인하를 재건의 하오니 현행 과태료율의 10분 1이하로 인하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처해 주시기를 거듭 전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전의문을 각각 전바 있다.

## 본회임원 민정당 방문

### -과태료율 인하건의 설명위해-

본회 이상윤회장과 박규병경북지부장, 류종래 이사, 경북의 최동원회원, 황인옥전무는 지난 6월 17일 민정당 정책위원회(농림전문위, 건설전문위)와 국회 건설분과위원장, 법사위원장 방문, 최근 축산인들의 관심이 높은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율 인하에 대한 전의내용을

## ● 대한양계협회소식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적으로 재조정 해줄것을  
전의했다.

본회는 그동안 과태료율을 재조정해 줄것을  
건설부와 민정당에 전의하였으나 시한만 9월  
말로 연장되었을 뿐 요율인하에 대하여는 미온  
적인 반응이어서 전국 양축가들의 강력한 의지  
를 전달해 민정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정책의안  
으로 채택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어 좋은 결과  
가 기대되고 있다.

### 선진지 양계산업 시찰 - 육계분과위원회, 1박 2일 -



△선진지 시찰단(고창양계 종계장에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는 국내  
선진양계농가 및 최신도계장을 시찰하기 위해 지  
난 5월 23일(목)~24일(금) 1박 2일에 걸쳐  
전북 고창농장과 이리소재 호남농축 등 선전지  
를 시찰했다.

지난 5월 27일 개최된 5월중 육계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되어 6월 육계분과위원회로 대  
체된 이번 선전지시찰은 육계분과 20여명이 참  
석 23일에는 전북 고창양계센타를 방문 무창계  
사 및 간이계사의 자동급이시설, 환경관리에 따  
른 생산성 증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장시

설을 견학하고 부근 내장산관광호텔에서 1박  
하였다.

24일에는 오전중에 내장산 관광을 마치고 이  
리시 외곽의 호남농축을 방문, 현대식 최신시설  
의 도계공장을 견학하고 도계장축과 육계유통  
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이고 발전적  
인 육계유통방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  
다.

한편 이날 참가한 육계분과위원회들은 최근 경  
기도 일원에서 문제가 심각한 간이계사철거 문  
제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적은 자본으로 간이계  
사를 설치하여 육계를 경영하는 육계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건축법상 건축자재로 보온덮개(파이  
프)를 인정해 줄것 △축사건축시 건축설계 허  
가수수료 인하조정 △생산효율면에서 축산의 대  
형화에 맞추어 축협에서 제정한 축사표준설계를  
대형화, 다양화해서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료값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순응하는것 보다는 이유있게 받아들  
이는 양축가 자세 등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  
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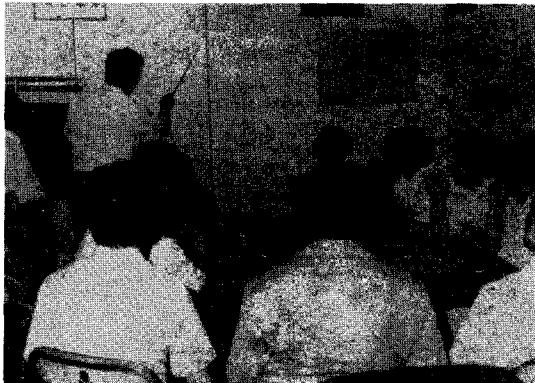
이밖에도 선진농장 견학을 통해 자신의 농장  
과 비교검토는 연구하는 양축가의 자세에서  
육계산업의 발전의지를 볼 수 있었다.

선진지시찰에 참여한 육계분과위원명단은 다  
음과 같다.

- 부천분회 : 장민기, 이수옥, 이병용, 천삼기,  
    원용필
- 포천분회 : 원승재
- 용인분회 : 임종호
- 수원분회 : 강석부, 송상정, 조정래, 김동성,  
    박성귀, 최두훈, 임진관, 김동민
- 의정부계우회 : 정지훈, 김용국, 김태진
- 온양계우회 : 정동명
- 일산계우회 : 이태근

## 단경제능력검정소 부지 확정

안성군 서운면에 시설설비 추진중 -



△ 6월 27일 제3차 검정위원회

지난 5월 31일과 6월 11일, 6월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먼저 5월 31일 열린 제 1차 회의에서는 경과 보고가 있은 후, 17회 산란계 성적이 검토되었으며 검정소 이전에 따른 시설설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 6월 11일의 제 2차 회의에서는 검정소 산란계사의 방향, 건물의 크기 및 형태, 내부시설 및 기타시설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장단회의에서 재차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검정소 부지로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산72-1번지 외 그필지 11,410평을 매입한 바 있다.

## 본회 회장단회의 개최

6월 월례 회장단회의가 본회 회의실에서 이상윤회장, 신흥종, 박준영, 고태영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수)에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간중 업무현황 보고와 현

안문제 협의를 하였는데, 하계 강습회 개최, 부화분과 위원회 개최, 양계 선진지 시찰, 도지부 보조금건을 협의하고 계란G.P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건의(농수산부, 축협) 및 무허가건물 양성화 과태료율 인하에 따른 대정부 재건의 등이 협의되었다.

## 제 6회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 난가통일문제, 현실화문제 등 제기 -

올해 여섯 번째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水)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 앞서 가진 세미나에서 하낙순(퓨리나코리아가금개발부) 부장은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산란계의 육성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의 의문점을 질의응답하기도 했다.

이어 본회 황인옥 전무는 협회주요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시세속보를 농수산부에 제시하게 되는 등 그 비중이 날로 더해 가고 있으므로 세속보 발행시 더욱 정확히 해야 할 것이며, 가격도 동일하게 통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문, TV 등에 보도된 바 있는 카드뮴 검출 내용은 기준치 이하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난가조절 및 난가고시 문제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난가의 가고시제의 지속과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으며, 인천은 가격이 상승세인데, 서울의 하락세로 인해 입장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상인에 통고하여 덤펑 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으로는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난가 문제를 다음 날인 6월 16일

## ● 대한양계협회소식

난가조절위원회를 소집 결정토록 했으며, 앞으로의 난가고시는 양계협회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잡지에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선진자 시찰전은 가을로 미루어졌다.

### 닭고기 수매비축 보류

지난 4월 말부터 육계가격이 kg당 700원 이하로 하락하자 농수산부와 축협에 수매를 건의하여 검토하던 중 육계 생산자 가격이 kg당 900원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당분간 판망한 후

육계출하가격이 경영비 수준이하로 하락해 회복 전망이 어렵게되면 다시 검토키로 농수산부에서 회신이 왔다.

이에따라 육계농가에서는 병아리 입추에 신중을 기해 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7월초 육계가격은 kg당 지역별로 850원~1,000원에 출하되고 있다.

### 간이계사 철거령

경기도일원에 보온덮개 간이계사에 대해서 철거령이 내렸다.

아직은 계고장만 받은 형태이나 강제 철거당한 사례는 없는 불안한 상태이다. 들리는 말로는 일부군에서는 철거반에 동원될 인부까지 선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80% 이상의 부로일려와 30% 정도의 산란계가 간이계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히 불안하지 않을수 없다.

일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는 간이계사는 외상사질이라고 써붙인곳도 있으며 사료공장의 외상값 독촉도 대단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일시에 전지역에 계고장을 보내서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경기도 일원에서 철거가 강행될 경우 계란이나 닭고기의 수급차질은 물론 철거된 영세양축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문제 등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할 장소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거만 강행된다면 당국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공해업소 이전이 수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들이 옮겨갈 장소와 이전비용 등 사후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철거이유가 농지불법전용으로 농토가 잠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값싼곳을 택하기 때문에 농사가 안되는 자갈밭이나 임야 등을 사용하고 있어 현지확인 후 이런 곳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최근 협회에서 검정소부지를 선정키 위해서 경기도일원을 살살이 살펴보았지만 막상 계사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지않다는 것을 알았다.

철대농기, 상대농지에 치울 수 있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그린벨트, 상수도보호지구(수도법 제3조) 산림법 제90조, 제88조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등 복잡하여 철거명령은 영세축산인으로서는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 두 사람도 한줄 서기